

[2024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1. 선발 대상

- 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포함, 초과학기자 제외)
 - 2024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 자격
 - 한국장학재단 2024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보호연장아동 포함),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가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4.5만점)인 자 (신·편입생은 입학 당시 성적 반영)
 - ※ 2024학년도 신입생은 입학성적 총점(1,000점)을 반영하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 2024학년도 대졸자 전형 신입생 및 편입생은 전적 대학 성적(입학성적기준)을 반영함
 - ※ 2학기(계속)장학금 지원은 ‘계속장학생 지원 자격’ 충족 시 지급됨(기준 미달 시 미지급)

[계속장학생 지원 자격]

- 직전 정규학기(2024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 기준 적용

2. 지원 내용

- 선발 인원 : 총 3명
- 지원 기간 : 2개 학기(2024년 1학기~2학기)
- 지원 금액 : 학기당 150만원 장학금 지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3. 신청 기간 : 2024.04.11.(목) ~ 04.19.(금) 12:00까지 (※ 기간 외 서류는 받지 않음. 기간 엄수)

4. 제출 서류

- ①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서
- ② 2024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③ 성적증명서(※ 2024학년도 신·편입생 제외)
- ④ 신청유형별 제출 서류(※ 아래 붙임 제출서류 참고)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기간 외 서류는 서류 미제출로 평가)

5. 심사 및 선발방법

- ① 소득분위 0분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부터 순차적으로 선발
- ② 동일 소득분위 시,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

6.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① 학생 신청 및 서류 제출 : 4월 19일(금) 12:00까지
- ② 대학 대상자 선발 및 추천 : 4월 22일(예정) / 개별통보(예정)
- ③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추천자 본인 장학금 신청 : 4월 23일~23일 12:00까지
- ④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최종 선정 및 장학금 지급 : 5월 예정

7. 제출처 : 대학본부 1층 학생지원팀

8.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처리하여 제출(공개된 자료는 미제출로 평가)
- 선발된 장학생은 선발 통보 이후 4월 23일 12:00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신청을 최종완료해야만 신청이 완료됨(※ 기간 내 미신청 시, 장학생 추천 취소 및 차순위 학생 추천 예정)
- 계속장학생(2학기) 기준을 미달일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2학기 추가선발 신청이 제한됨
- 학기 도중 휴학(군휴학 포함), 자퇴, 편입, 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이 일어날 경우, 해당 학기 수혜 받은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
- 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 위·변조로 판명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수혜받은 장학금 전액 환수됨

8. 기타 문의 : 학생지원팀 ☎ 031-249-6231~4, 244)

2024. 04. 11.

학 생 처 장

붙임 1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 주민등록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 (비공개 미처리 시 서류 미제출로 심사)

구 분	자 격	제 출 서 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보호종료 확인서,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자격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he지역 출신 학생 (자격 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 기숙사, 고지서 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